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2.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 3. 기타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단서 중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를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로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교원전체회의"를 "교직원 전체회의"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단서 중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을 "잔여 임기가 3월 미만

인 경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학부모 및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를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로 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중 "연10회"를 "연8회"로 하고, "연30일"을 "연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①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별로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6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등)"을 "(사용제한)"으로 하며, 제6조 본문 중 "원장은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에 퇴소한 경우 또는 파오납한 경우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